

#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71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(안 제7조)
- 수입증지 판매 신청시 인감제,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제도 폐지(안 제9조)
-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이나 위치변경 및 해지시 10일전에서 2일전까지 계약변경토록 완화(안 제11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경상남도수입증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전환하고, 판매 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
- 군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관련 규정을 완화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수입증지 판매개소와 판매수수료 지급규모는
- 답 : 총 15개소로 읍면 14개소, 군 1개소이며,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3%임.
- 문 : 공무원이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지
- 답 : 공무원이 판매분에 대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, 수익금은 상조회 복리향상에 기여하게 됨.
- 문 : 계약은 쌍방계약으로 성립되는데 별도로 계약을 하는지
- 답 : 표준안에 의거 쌍방계약 없이 계약신청서로 계약을 가름함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